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1일, 이병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4.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6.)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진 의원)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1. 국가 등 책무규정을 의무규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운송 참여자가 동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운송사업 등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u>하여야 한다.</u>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u>할 수</u> 있고,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 ----- <u>하여야</u> <u>하고</u>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으로 국가는 항만운송 참여자¹⁾가 동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1)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운송사업 등 운영의 전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그런데, 지난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³⁾하는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에서는 항만운송 참여자 및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등의 책무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항만사업장 산업재해 통계]⁴⁾

< 재해자 현황 >

계(명)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9.
2,863	273	242	220	268	274	278	367	351	335	255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8.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2) 「항만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평택항 청년 노동자 사망..반복되는 비극”, 연합뉴스(2021.5.11.)

4) <참고자료 1, 최근 10년간 항만사업장 산업재해 통계, 고용노동부>

< 업무상 사고 사망자 현황 >

계(명)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9.
40	6	6	3	8	3	3	4	1	4	2

※고용노동부

□ 이에 개정안은 국가등의 항만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책무규정을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항만 내 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내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국가등이 이러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면 항만운송관련사업자들이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국가가 항만운송 참여자가 동 법은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은 지원대상을 항만운송 참여자 및 항만운송사업자 등으로 직접적으로 명시하며, 포괄적인 지원의무 규정으로 국가등 책무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 입법례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일반적 입법례인 국가 등의 책무규정에서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⁵⁾, 일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 관련된 강행규정에서도 관련 시책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⁶⁾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 규정으로 의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5) ① ~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② ~ 필요한 시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지원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경우, 항만운송참여자가 항만에서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국가 등의 책임으로 해석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항만운송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입법취지도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 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항만안전 기본계획 등 수립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 관련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등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1. <u>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u> 2. <u>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u> 3. <u>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u> 4. <u>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u> 5. <u>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u>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④ <u>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⑤ <u>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⑥ <u>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항만안전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항만안전에 관한 정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법정계획 형태로 수립하게 되면 항만안전에 관한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집행할 수 있게 되므로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의의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에 관한 장기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나, 항만하역 현장에서는 항만안전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을 원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하

다는 의견임.

3. 항만운송 참여자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만운송 참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리청은(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또는 항만안전사고의

발생원인 및 피해등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 그런데, 현행법에는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항만운송 참여자(사업주)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어 관례적으로 하역사 등이 항만에서 사고발생을 인지한 경우 해양수산부 상황실 또는 해당 관할 항만점검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양수산부가 항만안전사고 관련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인명사고 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실례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항만안전사고 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 제시된 자료와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항만안전사고 자료 수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항만내 사고 사망자 현황(고용노동부) >

계(명)	'22	'23	'24.9.
7	1	4	2

※고용노동부

< 항만내 사고 사망자 현황(해양수산부) >⁸⁾

7)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사업정지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8) <참고자료 2, 항만 내 주요 안전사고사례('22.8~'24.12), 해양수산부>

계(명)	'22	'23	'24.9.
13	3	4	6

※해양수산부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는 것을 막고,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며,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상 대응절차 비교]

구분	「항만안전특별법」(항만안전점검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감독관)
사업주 보고의무	X	○ (제54조⑨) 고노부장관에게 보고)
현장확인·작업중지	(제12조제1항 단서) 안전확보(항만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사고조사등 긴급한 사유 발생시 작업 일시 정지	(제55조①·②) ¹⁰⁾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 판단시 작업 중지
사고원인 조사	(시행규칙 제6조제2호) 사고원인 조사를 수행	(제56조①) ¹¹⁾ 고노부장관 원인 규명 등 위해 발생원인 조사 실시
개선조치명령	-	(제56조②) ¹²⁾ 고노부장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필요한 조치 명령
해제	-	(제55조③) ¹³⁾ 고노부장관 사업주 작업중지 해제 요청시 심의위원회 거쳐 작업중지 해제
등록취소·사업정지	(제12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또는 제6조 위반한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등 등록취소하거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처벌 (징역·벌금)	-	사고원인 조사결과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
과태료	-	(제175조제2항제2호) 사업주 고노부장관에게 미보고시 3천만원

9)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 이에 개정안은 항만안전사고 관련 긴급한 조치를 위해서 항만운송 참여자(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해양수산부에게도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의 소관 업무인 항만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를 도모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항만시설 등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짐.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사실 보고의무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고 있는데,¹⁴⁾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처벌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이중 보고 의무에 따른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보임.

- 둘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고발생의 보고 등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이중 부담(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항만 안전사고에 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특히, 법체계적 측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보고의무, 현장확인·작업중지 및 사고원인 조사 실시 및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3천 만원 이하)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14)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0호,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항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해양수산부가 지체없이 사고 발생의 사실을 통보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통해 사고발생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관리청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 및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 ----- ----- ----- -----공 <u>개하여야 한다.</u> -----

현행	개정안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제11조의2(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조에서는 항만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¹⁵⁾.
-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립하는 정책의 기초로 활용되는 항만안전사고 관련 통계 등이 항만하역을 위주로 하는 항만의 근로 환경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실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항만안전사고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조치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와 항만안전사고 예방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특히,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승인통계(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인정)로서 고용노동부가 생산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¹⁶⁾를 토대

15) 「항만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6)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로 산업간 재해율, 재해양상, 업체 규모 등을 비교하여 산업별 재해 감축목표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음.

- 그런데, 항만재해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동 통계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사업체 등록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만별 재해발생 현황을 특정할 수 없고, 표준산업분류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항만안전사고에 특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항만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보여짐.

- 다만, 개정안의 실태조사 사항 중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은 이미 정부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실태조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실태조사의 목적을 이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예: 항만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 항만에서 발생하는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항만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항만에 특화된 재해통계를 위한 실태조사와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항만하역사 등이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이행 등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함.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의 입법목적과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안 제3조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항만하역 현장에서 항만안전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4조의2제1항제6호),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해양수산부가 지체없이 사고 발생의 사실을 통보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통해 사고발생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고(안 제6조제3항),

실태조사 내용 중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현황은 삭제하고, 실태조사를 항만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항만안전 실태조사로 구분하며, 항만안전 실태조사에 필요한 내용 신설하고, 조문위치는 법률체계에 맞도록 이동함(안 제4조의3).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로 한다.

안 제4조의2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항만안전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항만안전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이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
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
5. 기타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항만 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안 제11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고, 이에 <u>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u>	② ----- ----- ----- ----- -----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야 하고----- ----- -----	② ----- ----- ----- ----- -----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고, 이에 <u>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하여야 하고</u> -----

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항만안전기
본계획 등 수립·
시행)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항만안전
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
책방향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에 관한 사
항

3. 항만시설 안전관
리 제도 및 업무

제4조의2(항만안전기
본계획 등 수립·
시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 5. (개정안과
같음)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항만안전 전문인
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항만안
전의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사
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
라 매년 항만안전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의 수립·변
경 또는 시행을 위

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
에 관한 사항

7. (개정안 제6호와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이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관
보에 고시하고, 제4
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알
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항만안전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실태조사(이하 “항만안전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항만안전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비,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이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

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

5. 기타 항만안전
과 관련한 사항으
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
를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
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출을 요청받은 관
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항만운송 참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
---	--	---

<신 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실을 보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
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
사의 시기·방법·

	<u>절차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해양수산부</u> <u>령으로 정한다.</u>	
--	---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며”를 “하고”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
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
5. 기타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의무”를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단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u>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u> <u>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u> <u>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 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 영의 전 단계에 걸쳐 <u>필요한</u> <u>지원을 할 수 있고</u> , 이와 관련 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② ----- ----- ----- -----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u>노력하여야 하며</u> ----- ----- -----하고----- ----- -----.
<u><신 설></u>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u>해양수산부장</u> <u>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u>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
전교육에 관한 사항

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또
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신 설>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

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

5. 기타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
보 의무) ① · ② (생략)

<신설>

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나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
보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u>공개할 수 있다</u>.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u>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u>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 ----- ----- ----- ----- -----<u>공개하여야 한다.</u> ----- ----- -----.
--	--